

# 2015년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15. 10. 29(목) 11:00

2. 장 소 : 대표이사실

3. 참석임원: 이사 총 7명중 5명 참석

대표이사 장영순, 이사 이상주, 이사 이충호, 이사 이상문,  
이사 권도국

참석직원: 김인수법인국장

4. 심의안건: 1) 이사선임건  
2)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3) 기타토의(안)

## 5. 회의내용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장영순의장 : 재적이사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 2) 전차회의록 접수승인

○ 장영순의장 : 간사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케 하고 이의여부를 물은 결과, 이사진 전원이 이의 없다고 답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승인하기로 선포하다.

### 3) 안건상정 및 결의사항

#### (1) 제1안건 이사선임건

○ 장영순의장 : 본인을 포함한 이상주, 김영길, 김정환, 이충호이사께서 2015년 11월 29일자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손과손 정관 제18조에

의거 선임하고자 한다. 본인과 이상주, 이충호이사께서는 연임의사를 밝히셨고 김영길, 김정환이사께서는 임기만료를 계기로 퇴임하시게 되어 후임으로 황금복, 홍인식님을 추천하다. 황금복님은 보건복지부 보건연구관으로 정년퇴임하시고 현재 한국기독교복지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며, 홍인식님은 본 법인의 전 이사로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을 역임하였음을 설명하고 인사서류 검토 후 의견을 요청하다.

○ 권도국이사 :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상주, 이충호이사의 연임에 동의하며, 황금복, 홍인식님은 사회복지의 전문가로서 이사로 선임되기에 적합하다 사료되어 이사선임에 동의하다.

○ 이상문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1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2)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심의

○ 장영순의장 : 소재지 표기방식 변경, 인천시의 정관정비계획에 맞춘 일체 정비와 공산품 제조판매사업의 생산품명 표기를 위한 정관 일부개정정관(안)을 상정하며, 정관 일부개정정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김인수법인국장 : 소재지 표기 방식 변경은 정부시책에 의거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수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정관 제3조(사업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33번지에 둔다.”를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87에 둔다.”로 변경하고자 한다. 다음은 인천시의 정관정비계획에 맞춘 일체 정비로 제4조(사업의 종류) 제1호의 “지적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운영”를 “장애인 거주시설”로 변경하고, 제16조(임원의 선임) “③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25조(이사회회의 소집 등) 제②항의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를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로, 제30조(이사회회의 의록) 제①②항의 “의사록”을 “회의록”으로, 제③항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법인

산하기관 행인행에서 생산하는 재생카트리지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과정 중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업생산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정관에 생산품명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제31조(수익사업) 제①항 “1. 공산품제조판매사업”을 “1. 공산품제조판매사업(재생카트리지, 칫솔, 종이컵 등)”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 장영순의장 : 첨부한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검토 후 의견을 요청하다.
- 이상주이사 : 정부 시책과 인천시 정관정비계획, 산하 기관의 생산품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위한 정관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상문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2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3) 기타토의(안)

- 장영순의장 : 기타토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없다고 답하다.

### 6. 폐회

- 장영순의장 : 폐회동의를 확인한 결과, 전원이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고 12:00에 폐회하다.

위와 같이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다.

2015. 10. 29.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

장영순 

이 사

이상주



이 사

이충호



이 사

이상문



이 사

권도국

